

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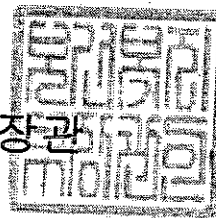
수신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검사총괄팀-1515(2010.05.26)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귀 원에서 질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내용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불임 : 질의답변서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주무관

장수호

행정사무관

성재경

장애인권익지원과 06/16
장 김동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권익지원과-1193 (2010.06.16.) 접수 검사총괄팀-1796 (2010.06.16.)

우 110793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http://www.mw.go.kr

전화 02-2023-8652 /전송 02-2023-8655 / jang566@korea.kr / 비공개

■ 장애인용엘리베이터 검사기준 유권해석 질의 답변

1. 9.다.(1)항에 대하여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m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m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 질의내용

- 1) 주 조작반의 경우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 주조작반(일반 이용자 및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조작반)은 상기 스위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의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
- 2) Ten-Key(0~9번) 호출방식의 적용 가능여부?
- 시각장애인이 사용 가능하도록 음성서비스(버튼을 누를 때 음성으로 번호를 알려주는 방식) 등을 제공할 경우 Ten-Key(0~9번) 호출방식이 설치가 가능하며, 키보드 숫자 배열방식 보다는 전화다이얼 배열방식을 권장함. 또한 번호를 잘못 누를 경우를 대비해 정정·취소 버튼이 있어야 하며, 다른 방식의 호출방식에도 수정 기능이 있어야 함. 또한 모든 Ten-Key버튼에 점자표시가 필요함.

2. 9.다.(2)항에 대하여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m × 1.4m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 질의내용

- 1) 0.85 m 내외에 대한 적용기준 여부?
- 조작반 스위치의 높이가 0.8m~1.2m사이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며, 조작반 자체의 높이는 조작반 중심선을 기준으로 0.85m내외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임.
- 2) 관통형의 경우 진입방향 양측 모두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 나머지는 진입 방향의 양쪽으로 설치해야 함.
- 3) 휠체어조작반이 반드시 가로형으로 설치되어야 하는지 여부?
- 가로형조작반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 높이뿐만 아니라 그 설치위치에 있어서도 이용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세로형은 불가함.

3. 9.나.(2)항에 대하여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m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을 0.9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질의내용

1) "0.9m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강제규정 사항인지 ?

- 강제규정으로는 볼 수 없으며 신축건물의 출입문이 0.8m 이상으로 설치되었다면 상기 검사기준에 저촉되지 않음.

4. 9.가.(3)항에 대하여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m이상 1.4m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질의내용

1) "광감지식개폐장치"를 비접촉 방식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 기존 검사기준 적용시 "광감지식개폐장치"과 비접촉 방식은 사실상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 적용되었으므로 비접촉식으로 해석해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2) 세이프티슈 방식(접촉 방식) 적용시 일정 부분에 비접촉식 센스 추가 설치된 경우 상기 검사기준이 적용되는지?

- 세이프티슈의 특정 부분에 센스가 추가 설치된 경우 센스에 의한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기 검사기준에 저촉되지 않음.

5. 9.나(1)항에 대하여

엘리베이터 내부의 유효바닥 면적은 폭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m 이상으로 한다.

○ 질의내용

1) "신축한 건물" 적용은 증축건물(층수변경), 용도변경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

- "신축한 건물"이란 기존 건물과 독립되어 새로 증축된 건물과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그 규모범위 내에서 새로 개축 및 재축한 건물, 그리고 신축건물에 설치되는 대상 승강기를 의미함. 따라서 층수변경만으로 이루어지는 증축과 단순 용도변경은 해당하지 않음.

6. 9.나(1)항에 대하여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 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m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질의내용

1)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란 9.다.(2)항에 규정되어 있는 유효바닥면적 1.4m×1.4m 미만인 경우로 판단해도 되는지?

-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 불가능한 경우란 9.다.(2)항에 규정되어 있는 유효바닥면적 1.4m×1.4m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고, 신축한 건물의 유효바닥면적 1.6m×1.35m인 승강기의 경우에도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가능한 승강기로 간주.

2) “견고한 재질의 거울”이란 유리의 재질에 대한 기준인지, 설치상태에 대한 기준인지?

- “견고한 재질의 거울”의 의미는 거울에 관한 재질의 견고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상태가 견고하고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 단, 거울 상태가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설치·관리되고 있어야 함.

7. 9.라.(1)항에 대하여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m이상 0.9m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 손잡이 사이에 3cm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손잡이 세부기준 제7호 >

(2)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m이상 0.9m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m내외,아랫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cm이상 3.8cm이하로 하여야 한다.

(4)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cm 내외로 하여야 한다.

(5)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질의내용

1) 0.85내외 및 0.65내외의 기준은?

- 본 조항은 오차 허용 범위에 관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건축법에서 쓰이는 3% 이내로 정함.

2) “(5) 손잡이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의 적용이 엘리베이터 손잡이에도 적용을 해야 하는지?

- 손잡이 세부기준 제7호 (5)항은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손잡이 설치기준으로 엘리베이터 손잡이에는 적용되지 않음.

8. 9.라.(3)항에 대하여

각 층의 승강장에는 엘리베이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질의내용

1) 군관리방식 또는 군승합방식 적용 가능한지?

- 군관리 방식은 독립적으로 운행되는 장애인전용엘리베이터를 확보할 경우 허용될 수 있음. 다만, 승강기가 2대일 경우 군관리방식(또는 군승합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승강기 두 대가 모두에 장애인용 승강기 기준을 충족해야 함

2) 격층 운행도 가능 여부 ?

- 격층 운행은 불가함. 단, 구조적으로 승강기가 분리될 경우(지상층과 지하층의 분리)라도 연결이 되어 있어 건물 전층간 이동이 가능해야 함

9. 9.다(3),(4)항에 대하여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질의내용

1) 0~9번으로만 구성된 형태인 경우 5번에만 점자 표시를 할 경우 상기 검사기준에 저촉되는지?

- 조작버튼은 푸쉬버튼 형태로 0~9번 등 모든 버튼에 점자 표시를 하여야 함.

(터치버튼 적용 불가 : 시각장애인 이용불가)

2) 휠체어조작반에도 점자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 주조작반에 점자표시가 있는 경우 휠체어조작반에는 점자표시 부착이 의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하는 조작반으로 인식되는 바 점자표시 부착을 권장함.

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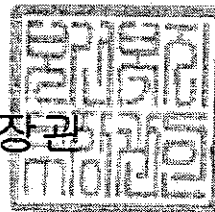
수신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검사총괄팀-2392(2010.08.03)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귀 원에서 질의한 장애인용 승강기 검사기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불임 : 질의답변서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주무관

장수호

행정사무관

성재경

장애인권익지원과 08/11
장 김동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권익지원과-2034 (2010.08.12.) 접수 검사총괄팀-@N ()

우 110793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http://www.mw.go.kr>

전화 02-2023-8652 / 전송 02-2023-8655 / jang566@korea.kr / 비공개

질의 답변

□ 질의 : 장애인용 승강기 검사기준에 관한 질의

- 2대의 장애인용 승강기 사이에 승강장 호출버튼을 1개만 설치하여 군관리(군승합)방식의 적용 가능여부?
- 3대 이상의 군관리방식에 장애인용 승강기의 적용 가능여부

□ 답변

- 승강기가 2대일 경우 군관리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승강기 두 대가 모두에 장애인용 승강기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이 때 호출 버튼은 두 대의 승강기 중앙에 1개만 설치해도 허용 가능함.
- 3대 이상의 승강기를 운행할 때는 어느 승강기가 호출될지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군관리 방식을 적용할 수 없고, 적어도 하나의 승강기를 독립적으로 전층 운행해야 함.